

# 2016년 세법개정안 중견기업 관련 내용

- '16.7.28, 한국중견기업연합회 -

★세법개정안은 국회 심의 확정 후 '17.1월부터 시행

분류	내 용	현 행	개 정 안	중견기업의견내용
연구개발	신성장·원천기술 R&D세액공제 (조특법 제10조)	□ 공제율 ·중소 30% ·중견·대기업 20%	·(좌 등) ·최대 30%까지 확대	중견구간 신설 (25%)
	기술취득 세액공제 (조특법 제12조)	중소기업만 7% 공제	중견·대기업까지 확대 ·중소 10% ·중견·대기업 5%	중견까지 확대
	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의5)	신 설	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시 투자금액 공제 중소 10%, 중견 8%, 대기업 7% ('18.12.31까지)	
투자	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의2)	중소 6%, 중견 3%, 대기업 1% ('16.12.31까지)	일몰연장 '19.12.31까지	일몰연장
	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의3)	중소 10%, 중견 5%, 대기업 3% ('16.12.31까지)	일몰연장 '19.12.31까지	일몰연장
	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의4)	중소 7%, 중견 5%, 대기업 3% ('16.12.31까지)	일몰연장 '19.12.31까지	일몰연장
	문화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(조특법 제25조의6)	신 설	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 중소 10%, 중견·대기업 7%	
	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(조특법 제28조의2) *법인세법에서 조특법으로 이관	중소기업만 가속상각 허용 ('16.6.30까지)	중견까지 확대 및 일몰연장('17.6.30까지)	중견까지 확대
	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(조특법 제104조의24, 제118조의2)	·(법인세) 중견·대기업은 완전복귀시에만 지원 ·(관세) 중소기업이 국내 복귀위해 수입한 자본재 50 ~ 100% 감면	·중견기업도 부분복귀시 법인세 감면 ·중견까지 확대	중견까지 확대 ('15년에 건의)
	조특법 상 중소·중견 업종제한 (조특령 제2조, 제23조)	제조업, 건설업 등 52개 업종에 한해 지원	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업종으로 확대	서비스업 중견 지원확대
수입	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(관세법 제95조)	중소·중견 50% 감면 (중소는 영구지원, 중견은 '16.12.31까지)	중견기업 일몰연장 '18.12.31까지	중견도 영구화
	수출 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(부가법 제50조의2)	제조 중소기업 중 수출비중 30%이상 수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지원	중견기업까지 확대 (수출비중 50%이상)	
가업승계	가업상속공제 (상증법 제18조의2)	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	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 명확화	